제주지방법원 2023. 8. 28. 선고 2023가단52804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23가단5280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광우

피고 1. B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하성화

변론종결 2023. 7. 10.

판결선고 2023. 8. 28.

주 문

- 1. 피고 B은 원고에게 67,000,000원과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7.부터,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9.부터 각 2023.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5,600,000원과 그중 13,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7.부터, 나머지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각 2023.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3/4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과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서귀포지점 영업부장으로서 차량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혹은 차용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 C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구매차종	지급 명목	지급 일시	금액
D	3월달에 울산에서 계약한 차량이 있는데, 계약취소를 할 것 같다. 그 차량을	2022. 9. 27.	12,000,000
	가져오면 빨리 출고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이 계약한 금액을 전부 지급해달라.	2022. 9. 27.	5,000,000
	전국 영업부장들 상대로 차량을 할인하여 출고해주는 경우가 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하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출고할 수 있으니 계약을 하나 더 체결하라	2022. 9. 28.	40,000,000
	나에게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원래 타던 차량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차 출고대금을 정산해 줘야하는데 차량 판매가 늦어지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2022. 9. 29.	10,000,000
합계 : 67,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 C에 입금하여 차량을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1. 기초사실'의 나.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7,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67,000,000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의 2022. 9. 29. 편취 행위에 관한 피고 C의 책임 유무

피고 B이 원고에게 "나에게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원래 타던 차량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차 출고대금을 정산해 줘야하는데 차량 판매가 늦어지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22. 9. 29.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거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개인적 거래라 봄이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 C가 고객인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피고 B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C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 C가 사용자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 B의 나머지 편취 행위에 관한 피고 C의 책임 유무
- 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C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피고 C 지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차량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B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원고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5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피고 C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다.

나)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

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다3654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고객으로부터 차랑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각 고객으로 하여금 각 고객별로 부여되는 '고객전용 입금계좌'를 통하여 직접 이를 피고 C에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C의 방침을 알지 못하여 피고 B의 개인 계좌에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E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피고 B은 20년 이상 오래도록 피고 C의 차량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이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피고 B이 피고 C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리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피고 B은 평소에도 고객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고 C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 C가 반드시 고객들이 피고 C에 직접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또한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을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차량 매매계약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 원고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보인다.
- ④ 원고가 피고 C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피고 C가 정한 차량 대금 지급절차를 숙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 C가 다액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전국에 각 지점을 설치하고 소속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영업사원들을 신뢰한 가운데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며, 지점 운영비용. 영업사원들에 대한급여 등은 모두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전가된다. 결국 원고와 같은 고객들이 지급하는 차량 대금에는 피고 C가 영업사원들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영업사원들의 설명을 만연히 신뢰하지 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이 제공한 정보를 다시 검증해 보라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 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의 본질에 반한다.

다) 소결론

다만, 위와 같이 원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통상의 차랑 거래 절차를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C와 사이의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차량 출고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 B을 그대로 믿은 잘못이 있는바, 이를 과실상계에 참작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5,600,000원과(= 57,000,000원 × 0.8)이에 대하여 그중 13,600,000원(= 17,000,000원 × 0.8)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2. 9. 27.부터, 나머지 32,000,000원(= 40,000,000원 × 0.8)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일인 2022. 9. 28.부터 각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재남